

특허 제도 해설

金泓柱, 李赫純

韓國電子通信研究所 知的財產開發室

I. 서 설

인간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려는 인간의 욕구와 사고하는 생활방식과 습성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오늘날 고도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미래에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인류사회에서 이러한 과학기술을 무질서한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무체재산권적인 측면에서 일정기간 보호, 장려하여 보다 향상된 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1948년에 국제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27조의 규정을 보면 “모든 사람은 그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로이 참여하여 예술을 즐기고, 과학의 진보된 기술과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제작한 과학기술적, 문화적, 미술적 창작물(저작물)에 대해서도 그로부터 나오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되어 있다. 이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즉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창작물(저작물)의 보호 받을 권리를 함께 선언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렇듯 상반되는 두개의 권리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필요에 의한 보충적인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두 개의 권리를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상호 조화를 이루며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오늘날 지적재산권제도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인간이 향유할 수 있는 재산권은 크게 유체재산권과 무체재산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동산, 부동산 등 유체물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배권을 부여하는 일반적 재산권을 유체재산권이라 한다면 이에 반하여 인간의 지적, 정신적 산물 즉,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을 무체재산권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체재산권의 대상으로는 과학적 발명, 문화적 창작물, 기업체의 영업비밀 등 인간의 모든 지적창작물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권을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이라 한다.

지적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저작권(저작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 등), 신지적재산권(반도체칩 배치설계권, 영업비밀, Data Base 보호권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특허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1.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란 발명을 한 자에게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여 국가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과거 특허제도가 정립되기 전에는 발명자는 자기 발명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 속에 감추어 두었고, 실시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행하여 왔으므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되는 발명도 많았다.

이것은 사회 전체로 볼 때 커다란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및 인류문명의 발달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의 발명을 창작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에 그 발명을 사회에 공개하도록 하여 사회전체에 이익을 가져오도록 하는 동시에 발명자에게도 발명을 한 대가로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게 배려한 것이 특허제도이다.

2. 특허제도의 연혁 및 동향

세계 최초의 특허제도는 1824년 영국에서 제정된 특허법(Statute of Monopolies)의 실시이며,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1882년(고종 19년)경에 지석영 선생이 특허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왕에게 상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1908년 8월 12일(순종 2년)에 칙령 198호로 ‘대한제국특허령’이 공포되어 운용하여 오다가 한·일 합방으로 ‘일본 특허법’이, 광복 후에는 ‘미군정법령’이 지배하는 등 특허제도의 암흑기가 상당한 기간을 지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특허법은 법률 제950호(1961.12.13 공포)에 의거 현대적 체계로 정비되었고, 십여 차례

의 개정을 통하여 특허제도의 국제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오고 있으며,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PCT)등에 가입하여 국내외의 특허출원 및 권리확보 등에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제도는 GATT, UR에서 WTO에 이르는 일련의 협정 등으로 점차 국제화·통일화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교통의 발달, 국제무역의 확대에 따라서 각국의 특허제도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무역상·경제상 그리고 절차상으로 이용 또는 불편한 경우가 많고, 발명의 국제적 보호의 통일과 강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제도가 주로 선진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3. 특허출원의 필요성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쏟아 연구개발한 기술개발의 성과를 정리, 집약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특허로 출원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면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특허출원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리가 없을 뿐아니라 타인이 동일한 발명을 먼저 특허출원하여 특허를 받게되면 거액을 투자하여 자기가 개발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특허기술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술을 개발하기 전에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중복연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은 반드시 특허출원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II.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1. 실체적 요건

가. 특허를 받을 수 발명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 정의하고, 그에 해당하는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가능

성, 신규성, 진보성의 적극적 특허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1) 산업상 이용가능성

실제 각종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만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산업이라 함은 공업은 물론 농업, 광업, 수산업 등 각종 제조 가공업 및 채취업 등 모든 산업을 포함한다.

(2) 신규성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공연히 실시된 발명과 같지 않고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과 같지 아니하면 신규성이 있는 발명으로 본다.

(3) 진보성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공용된 사실이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 된다.

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앞에서 언급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산업정책이나 국민위생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열거한 경우들은 특허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고 있다.

(1)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

(2) 공공의 질서 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우려가 있는 발명

또한 다음과 같은 발명은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완성 상태의 발명

(2) 이론상으로 실시불가능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발명

(3) 계산법이나 작도법으로 인정되는 발명

(4) 암호 등의 작성 방법으로 인정되는 발명

(5)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이 빠진 발명

(6) 신규하지 않은 기술을 단순히 모아 놓은 발명

(7) 전자계산조직의 순수한 프로그래밍 방법

(8) 종래의 관례로서 물리적 또는 화학적 법칙

에 위반되는 것

(9) 무한동력이나 영구운동이라고 인정되는 것

(10) 진단법이나 인체를 발명의 구성에 대한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

2. 절차적 요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실체적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신규의 발명을 한자여야 한다.

(2) 권리능력이 있어야 한다.

(3)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4) 최선의 출원이어야 한다.

(5)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6) 특허출원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7) 공동발명은 공동출원해야 한다.

(8)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III. 특허 등록을 받기까지 절차

1. 특허 출원

발명을 특허로 만들어 유효하게 이용하자면 특허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절차의 첫걸음은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는 일이다.

출원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심사에 통과하느냐 못하느냐를 판단받는 기초자료가 되기도 하고, 또 특허를 받은 후에는 타인의 모방을 막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출원서류의 작성방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발명을 유효하게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출원서류의 작성방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허출원이란 법령에 정하여진 서식에 의한 특허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 심사청구서, 요약서 및 기타 법령에 의한 첨부 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서

류를 첨부하여 출원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출원을 하면 출원번호통지서를 교부받는다.

(1) 특허출원서

발명자, 출원인 및 대리인(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는 경우)의 인적사항, 발명의 명칭 등을 기재한다.

(2) 명세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면이 있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의 범위 등을 기재한다.

(3) 도면

특허출원에 있어서 도면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새로 개발한 제품은 어떤 제품이든지 그 제품을 판매한 후에 호평을 받고 잘 팔린 반응을 보고 그 때서야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특허를 받으려고 한 제품의 발명은 이미 공지가 된 상태로 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판매하기 전에 특허출원부터 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개발자들은 자신이 연구개발한 기술내용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논문을 먼저 발표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개발의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였을 때는 특허등록요건 중 “신규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등록이 거절되며, 심사관이 그를 인지하지 못하여 잘못 등록된 경우일지라도 타인의 무효심판청구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된다.

따라서, 논문발표된 내용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실질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한 것이지만) 신규성이 있는 것처럼 취급하는 “신규성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논문 발표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2) 특허출원시에 반드시 신규성 의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특허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증거자료로서 발표된 논문내용(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출원이 논문발표보다 선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논문발표가 선행되는 경우는 반드시 그에 대한 특허출원을 서둘러서 최대한 빨리 출원하여야 한다.

전항에 기재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신규성의 제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본인의 논문 발표일 이후에 논문을 발표한 본인이 그 내용을 특허출원하기 이전에 타인이 그와 동일한 기술내용을 먼저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후출원이 되어 특허 등록 요건 중 선출원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되어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 물론, 상기 타인 출원도 상기 논문발표에 의해 마찬가지로 신규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거절된다.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국내에 특허출원한 후 이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동일 발명을 외국에 특허출원하면 파리조약에 의해 국내의 특허출원일까지 출원일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데 한꺼번에 5개국 이상을 외국 여러나라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을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외국에 출원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2.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제도

출원공개제도는 특허법의 목적인 발명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원발명을 일정기간(1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사회일반에게 공포하고, 이때 출원인에게는 보상금 청구권 등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출원이 급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출원심사도 지연되어 권리 발생까지 방관할 경우 기술적 가치가 상실하게 되거나, 그 출원발명을 산업정보로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일반에 그 기술내용의 조기공개가 요구되는 것이다.

더구나 동일기술에 대한 중복된 연구, 투자가 행하여져 국가적 국민경제의 마이너스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출원내용을 공개하여 이를

이용토록 하고 반면에 공개된 발명 자체를 타인으로부터 도용 또는 모방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된 발명에 대해서는 법적보호수단도 강구되어 있다.

심사청구제도는 모든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관이 심사하지 않고 심사청구가 있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특허출원이 증대하여 심사가 적체되는 현상을 막는 동시에 과다한 심사비용을 줄이는데 있으며, 특허출원과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출원내용에 대한 실제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청구는 특허출원과 동시에 하거나 출원이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기한내에 심사청구가 없는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

3. 특허 심사

심사관 심사관이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특허등록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 및 판단하여 특허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특허는 출원한 후에 쉽게 권리로 받게 되는 경우 보다 어렵게 받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훌륭한 발명이 완성되어 특허를 출원했더라도 출원절차상 아무 문제도 없이 출원한 대로 쉽게 특허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이다.

따라서 출원한 후 특허청의 심사관과 출원인 사이에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거절이유통지서, 의견서 등의 서류를 주고 받는 것은 특허를 받기 위하여 진행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출원으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이 아니며 등록이 되기까지는 2~3년의 시간과 절차가 필요한 만큼 출원된 특허가 등록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4. 출원공고제도 및 특허이의신청제도

특허출원의 공고는 심사관이 출원을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 일반에게 그 내용을 알려 그 출원이 특허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사의 완벽을 기하고 또한 부실권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이 특허출원의 공개나 공고는 기술의 공

개를 성취시키는 수단이지만 공개와 공고의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출원공고의 효과로서는 가보호권이 발생하므로 출원공고된 발명을 타인이 실시하면 그 타인에 대하여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출원 공개의 효과로서는 그 출원이 출원공개된 경우에는 출원공개후부터 출원공고전까지 그 발명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특허이의신청제도는 출원공고된 특허에 대해 공중이 출원공고된 발명에 하자가 있어 특허를 허여하지 말 것을 특허청에 요구하는 제도이다.

5. 특허 사정 및 거절 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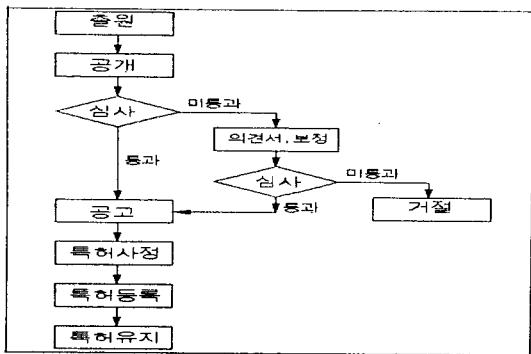
심사결과 특허등록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판단되면 공고결정하여 공중심사에 붙이게 된다. 이때 공고된 출원발명이 특허등록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든지 그 출원발명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사정 또는 거절사정을 하게 된다.

심사결과 특허등록될 수 없는 발명이라고 판단되면 거절사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절사정을 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게 되며, 출원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거 재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사정을 하고 거절이유가 해소된 때 또는 재심사결과 특허등록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거쳐 등록사정을 하게 된다.

6. 특허 등록 및 등록유지

특허등록이란 특허에 관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을 특허등록 원부에 등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원된 발명이 심사과정을 거쳐 특허사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특허등록 원부에 등록하기 전에는 특허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출원인은 특허 사정서를 송달받았을 경우 법령이 정한 기간내에 특허등록료를 납부하



(그림 1)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

는 등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단 특허권을 취득하면, 그것을 유효하게 보전하는 절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은 출원공고일로부터 15년간(출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몇년차분씩 납부하거나 일시에 완납할 수도 있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소멸된다.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받기까지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IV. 특허등록을 받은자의 권리(특허권)

1.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특허받은 발명을 독점배타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할 권리를 갖는다. 특허권에는 물건의 특허권과 방법의 특허권이 있으며 물건의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하고, 방법의 특허권자는 업으로 그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전시하는 행위를 독점한다.

한편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전용통상실시권 또는 약정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으며, 타인이 무단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리도 갖는다.

따라서 타인이 특허권을 무단으로 실시하게 되면 특허권자는 특허권자에 대해 경고, 침해금지 또는 예방,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신용회복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금지 거처분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특허권자는 다음에 열거한 경우 공익적 차원에서 특허권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1)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구 또는 시험하기 위한 발명의 실시

(나)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기타의 물건

(다)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2) 타인이 실시권을 갖는 경우

(3)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경우

(4) 특허권이 공유된 경우 및 질권이 설정된 경우

(5)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특허권 활용

특허권은 연구개발정보, 경영정보로서의 이용, 또는 특허의 실시권을 양도하여 이윤을 얻는 것 등을 포함하여 여러 갈래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라이센싱을 중심으로 특허권의 활용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국제경쟁력이란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능력을 말하는데, 경제환경이 점차 국제화, 세계화로 전환됨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경영전략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를 특허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특허를 보유하고 직접 실시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과 기술을 판매하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허 등 각종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자기가 이를 직접 사용 실시하기보다는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적당한 실시료를 받는 것이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기업이나 같은 국가내에 있어서도 상대적인 후발기업은 선진기업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 소화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기술을 도입하게 된다.

위와 같은 기술의 수요와 공급구조 때문에 기술 이전이 필요하게 되어, 기술권리 보유자는 수요자를 찾게 되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자는 기술 보유자를 찾게 되는데 기술시장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기술을 판매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각종의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매체를 이용하거나 라이센싱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적당한 파트너를 찾게 된다. 기술이 상품으로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상품가치를 가져야 하며, 각종 기술에 대해서 이를 그 내용에 걸맞게 지적재산권화 한다면 지적재산권이라는 보호막에 의해서 적절한 기술이전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어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V. 결 론

WTO 이후 세계는 거대한 하나의 시장 구도하에서 새로운 방향에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를 맞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식과

지혜의 정보화가 갖는 부가가치가 지배할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의 핵심으로 지적재산권, 특허가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이 기업상호간에 또는 국제적으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게 되면서, 그 동향이나 결과는 기업이나 국가의 장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물론 연구 업무 종사자는 모두가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개발에 착수하기 전에 선행기술검색을 철저히 하여 중복연구를 피하도록 하며, 연구개발결과에 대해서는 특허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특허출원만하고 심사청구를 하지 말것인지 잘 판단하여 진행 하되 외국에 출원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가급적이면 변리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여 시장성이 있는 국가를 선별하여 출원하도록 하며, 등록후에는 침해방지를 위한 감시활동을 계획하지 않아야 한다. 끝으로 특허제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에 있어 특허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를 원하는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으므로 실시를 원하는 제3자에게 특허권을 이전하거나 실시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특허권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저자 소개



金 泓 柱

1981年 2月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1983年 8月

경북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공학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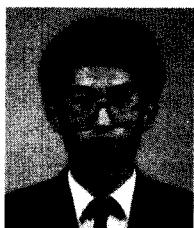
1983年 1月～1988年 12月

삼성전자 근무

1989年 2月～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반도체연구단, 정보기술개발단 지적재산
개발실 선임연구원

주관심 분야 : 반도체, 통신, 지적재산권 제도



李 赫 純

1989年 2月

충북대학교 졸업

1995年 8月

대전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전자계산학과(공학석사)

주관심 분야 : 지적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컴퓨터 알고리즘